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

2020년 4월 6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4. 5.(일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0. 4. 5.(일)	담당부서	에너지기술과
담당과장	박 훈 과장(044-203-5380)	담 당 자	신요한 사무관(044-203-5383)

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추가로 지정한다

- 7월 중 확정…지역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 기대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**는 에너지신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2020년 **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추가지정 계획을 발표**

* 4.6.(월) 추가지정 계획 지자체 공문발송

○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는 **지역별 특화된 에너지산업과 에너지 연관 산업**의 기업·기관·연구소 등이 모여 비용 감소와 기술 혁신 등의 **융복합 효과를 가져오는 집적단지를 의미**하며,

* 「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('17.12.)·시행('18.6.), 「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」 수립·고시('19.7.)

○ 지난해 8개 광역지자체*의 융복합단지 조성계획에 대해 전문가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, 전북(태양광, 풍력)과 광주·전남(스마트그리드, 에너지 효율향상)을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로 최초 지정('19.11.)한 바 있음

* 강원, 경남, 경북, 광주·전남, 부산·울산, 전북, 제주, 충북

□ 추가 지정을 위해 **6월 말**까지 희망지자체 **신청**을 받아 평가를 통해 **후보지를 선정**하고,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**7월말** 에너지위원회 심의에서 **단지 지정을 확정**할 계획임

○ **평가기준***은 지난해와 같이 **사업계획 구체성**(기반역량, 전략), **적합성**(단지조성 필요성, 정책부합성), **수행능력**(운영방안, 재원 조달) 등을 **종합적으로 판단**함

* 에너지융복합단지법 제9조(지정요건) : 에너지산업 등의 집적과 융복합 효과, 기반시설 유무, 일자리 창출, 전문인력 확보, 지속발전가능성 등

○ 특히, 올해는 **지자체의 정책 이해도**를 높이고, **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**을 **유도**하기 위해 지자체 조성계획(안)에 대해 산업·입지·경제성 등 분야별 **전문가 컨설팅*을 지원**할 예정임

* 1차 컨설팅 : 5.13.(자료제출 : ~5.8.), 2차 컨설팅 : 6.9.(자료제출 : ~6.3.)

□ 한편, **에너지융복합단지로 지정된 지역에**는 에너지 관련 기반시설 등이 구축되며, 전문연구기관 지정, 사업화 촉진, 전문 인력 양성 등도 지원할 계획임

* 종합지원센터 구축사업 추진 중('19~, 지자체별 200억원 규모)

○ 또한, **에너지특화기업 지정을 통해**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내 투자기업에 대해 **지방세 감면**, **정부 연구개발(R&D) 참여시 가점**, **지역투자 보조금 우대**, **공공기관 우선구매** 등의 **혜택**을 **적용**할 예정임

□ 산업부는 **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는** 지역 에너지 인프라를 바탕으로 **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조성계획을 수립**한다는 점에서 **지역경제에 활력**을 불어 넣는 **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**를 나타내면서,

○ 지역 맞춤형 사업과 지역주민 참여 확대를 통해 **지역의 기술역량을 강화**하는데 있어서, **정부도** 지역특화 실증연구와 사업화·마케팅 등 다방면으로 **적극적인 지원**을 할 것이라고 밝혔음

【붙 임】 1.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개념
2.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추가지정 계획(안)

OPEN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신요한 사무관(☎ 044-203-538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개념

□ **(정의) 에너지산업**(석유·가스·석탄·열·전기 및 신재생에너지 등을 포괄)과 **에너지연관산업**(에너지산업과 연관된 설비·부품·장비·정보화·서비스 등)의 **집적과 융복합**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 (법 제2조)

☞ 국가적 육성이 필요한 **에너지 중점산업**(법 제13조) 분야의 **산·학·연 협력** 네트워크를 구성, **기술혁신·융복합의 거점**이 되는 클러스터

□ **(구성요소)** 에너지 특화기업*, 연구소, 대학, 지원기관을 비롯하여 **에너지 공기업, 에너지 공급시설**(발전소 등), 실증·시험시설 등으로 구성

* 총 매출액 중 에너지 관련 매출액 비중이 50% 이상인 기업 (법 제14조)

☞ 기술·제품의 **최종 수요처인 에너지 공기업** 또는 **공급시설** 등을 포함하여, **집적효과를 극대화**하고 **타 클러스터와 차별화**

□ **(공간범위)** 토지이용 구역을 지정하여 신규 거점을 개발하는 방식이 아닌, **기존에 조성된 혁신도시, 산업단지, 전원개발구역 등을 연계**

☞ 에너지 시설 특성*을 고려하여 **물리적 반경·면적 제한을 두지 않되**, 산·학·연 **주요입지는 '국가혁신융복합단지' 수준으**로 집적 유도

* 해상풍력(육지로부터 10~30km 이격), 대규모 태양광(100MW 규모 조성시 약 1.3㎢ 필요)

□ **(조성방식) 지자체별 특화산업과 연계**한 에너지 중점산업*을 선정하고, **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**하여 클러스터 생태계 조기 구축

* 에너지 중점산업 : ①태양광, ②풍력, ③수소·연료전지, ④에너지 효율향상, ⑤석유, ⑥가스, ⑦스마트그리드, ⑧원자력, ⑨화력발전

☞ **재생에너지 단지, 에너지 공기업, 기존 주력산업 등을 활용**하여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가능

참고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추가지정 계획(안)

1. 추가지정 개요

○ **(평가대상)** 지자체가 제출하는 '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(안)'

○ **(절차)** 1차 서면평가, 2차 발표평가

단계	대상	선정방식
1단계	서면평가	- 모든 평가지표에서 '보통' 이상의 점수 획득 필요 * 등급(5단위) : 매우매흡, 미흡, 보통, 우수, 매우우수 - 정성적, 정량적 평가
2단계	발표평가	

○ **(기준) 중점산업의 차별성·적절성,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계획, 운영·관리 및 재원조달 방안**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

※ 지자체의 내실있는 조성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 지원

2. 추가지정 절차(안)

○ 컨설팅, 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**7월 중 추가지정 완료**

내 용	일 시	비 고
추가지정 안내	4.6.(월)	산업부 → 지자체
⇩		
컨설팅(1차, 2차)	1차(5.13.), 2차(6.9.)	전담기관(에기평) → 지자체
	* 컨설팅 관련 자료 제출일 : 1차(~5.8.), 2차(~6.3.)	
⇩		
조성계획서 제출	6.10.(수)~26.(금)	지자체 → 산업부, 전담기관
⇩		
지정평가	7.2.(목)~3.(금)	전담기관
⇩		
관계부처 협의	7.6.(월) ~16.(목)	산업부 → 관계부처, 지자체
⇩		
최종지정	7월 말	산업부(에너지위원회)

※ 위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